

Economy Outlook

2021.8.25

Economist

임동민

3771_9342

dmlim2337@iprovest.com

ESG 정보공개에 대한 IOSCO의 입장

공개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 2020 년 4 월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금융 네트워크 TF(SFN)'는 세계 금융시장의 ESG 관련 설문내용을 포함한 개선사항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 IOSCO 는 1) 투명성 제고, 2) 투자자 보호 목적을 갖고, 각국 규제기관들의 ESG 관련 모니터링 업무 및 기준 국제공조 업데이트를 전개할 예정. EU와 영국은 ESG 의무공시 제도를 도입 중. 2019 년 7 월 미국의회는 ESG 의무공시 관련 법안을 부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ESG 정보공개 중요성에 대해 재논의. 한편 민간 금융기업들은 이미 자율적 프레임워크에 참여

ESG 관련 설문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에 대한 리포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문제점	지속가능금융관련 공시 내용 미흡
	지속가능금융 관련 일관된 개념의 부재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 Green 과 White washing 의 합성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과 투자자보호 관련 문제
국제금융시장에서 ESG 규제관련 주요 목표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기후환경 공시체제 확립
	국가간 규제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서로간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개선 ESG 관련 공시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 개선
국가별 금융규제 현황 설문	공시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역할 : 83%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역할 : 45%
	ESG 관련 리스크를 금융리스크로 분류하여 공시를 의무화 : 41%
	금융기관들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 : 28%
현재 ESG 공시 기준 현황	규제기관 직원들을 위한 ESG 관련 교육 진행 : 48%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 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2010 년 영국에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보고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설립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국제보고서 가이드라인은 '97 년 설립된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미국의 환경단체인 CERES 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가 공동 설립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2011 년 설립된 미국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의 산업별 지속가능성 이슈 보고 기준
	TCFD(TF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는 2015 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기후관련 위험 정보 공개 기준을 제공해 올바른 의사결정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TF
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 유럽연합(EU)의 CSR 전략과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 (2018 년부터 적용)	
민간 프레임워크 참여	UN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 UN 산하 책임투자원칙기구로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시 대상 기업의 ESG 를 고려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현재 2,300 개 이상 기관이 참여 중. 2006 년 시행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0 설립되어 상장회사들의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슈 분석

자료: The Sustainable Finance Network of IOSCO(SFN)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서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중독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서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